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30호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관내에 설치된 신규 복지회관을 등재 및 기존 복지회관의 명칭을 수정하여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용어가 현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현행 법령 및 행정용어에 맞게 정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 통일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읍면 종합복지회관 수정 (안 별표)
- 나. 기존 행정용어 정비
 - 총무팀장 → 부읍·면장 등
- 다. 복지회관 시설용도 확대 (안 제9조)
- 라.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14조)
- 마.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5년 6월 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고가 있**”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회관내**”를 “**회관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총무팀장**”을 “**부읍·면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한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체육시설
3. 노인복지시설
4. 교육시설
5. 유아보육시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용시설별**”을 “**수용 시설별**”로, “**년도개시**”를 “**연도개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읍·면장은**”을 “**회관은 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제1항 중 “년1회”를 “연1회”로 한다.

제22조 중 “임실군 재무회계규칙을”을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회 관 명	위 치
청웅면 복지회관	임실군 청웅면 청웅로 141
신평면 복지회관	임실군 신평면 석등슬치로 311
성수면 복지회관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오수면 다목적복지회관	임실군 오수면 오수3길 14
신탣면 복지회관	임실군 신탣면 수지로 80
관촌문화의집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41
강진면 복지회관	임실군 강진면 호국로 4
덕치면 복지회관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1398
지사면 종합복지회관	임실군 지사면 충효로 2451
삼계면 박사골문화복지마당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2
운암면 복지회관	임실군 운암면 임운로 1861
임실읍 행복나눔센터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80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주민대표와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읍·면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관리

제9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체육시설
3. 노인복지시설
4. 교육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 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사용

제12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①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결정하되, 회관의 운영여건에 따라 사용요율을 증감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제18조(권리양도 제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위탁관리

제20조(위탁) ① 회관은 읍·면장이 직접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및 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실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